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2. ~ 11. 1.) 예정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9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2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2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5 제2호나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4의2 제1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4의2 제2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4의2 제3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4)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학사 학위를 취득”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기술능력 및 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 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원자력 또는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별표 제7호의 기술능력 및 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방사선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방사선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제6조(「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생명과학, 식품공학·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외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과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외국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환경·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산업대학,”을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학사 이상”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한다.

제9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산적 액체 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 포장된 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를 제
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
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
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0조(「진로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진로교육 관
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
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의 자격기준란 4)부터 6)까
지를 각각 5)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7)(종전의 6)) 중 “1)부터 5)까지”를 “1)부터 6)까지”로 한다.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별표 1 나목의 보호·자립 지원요원의 자격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별표 1 다목의 보호·상담원의 자격기준란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6)(종전의 5)) 중 “1)부터 4)까지”를 “1)부터 5)까지”로 한다.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④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을 취득한 후 <u>10년</u>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 ----- <u>5년</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u>9년</u> 이상 해당 업무 를 수행한 사람	6. ----- ----- <u>5년</u> ----- -----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u>12년</u> 이상 해당 업 무를 수행한 사람	7. ----- ----- <u>7년</u> ----- -----
<u><신 설></u>	8. <u>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생명과학, 식품공학·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업
<u><신설></u>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③ (생략)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u> <u>이 있는 사람</u>
<u><신설></u>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환경·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2</u> 의 <u>2</u> .· <u>3</u> . (생 략)	<u>5</u> .· <u>6</u> . (현행 제2호의2 및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4091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3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 락 처	(044) 203 - 6735
여성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6093